

# 2021년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5. 10.(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대행),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0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32건(안전번호 제2021-48211호~4860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48211호~48216호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48601호는 교육 목적으로 수업 교재와 함께 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저작권 보호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함.  
안전번호 제2021-48602호는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감상평과 함께 편집된 영상저작물 및 스크린샷을 제공한 사안으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본문 내용이 함께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될 수 있어 경고의 시정을 권고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2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0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5쪽 밴드명, 긴급대응 저작물명 및 저작물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2021-48251호는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2021. 3. 26. 출시한 게임임. 저작물 가격은 44,000원이며 웹하드 사이트에서 2,180포인트에 판매중임.

(영화 '크라이시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1-48377호는 미국에서 2021. 2. 26. 개봉하였고 심의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되지 영화임.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186포인트에 판매중임.

(컴퓨터 프로그램 '스케치업 프로 2018'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4852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2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교체파일(크랙)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이들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48211호~4860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금일 심의 안전에 1989년에 개봉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신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영화 저작물은 리마스터링되어 새로운 버전의 VOD가 출시되거나 재개봉되는 경우 모니터링 담당부서에서 최신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음. 죽은 시인의 사회는 2021. 4. 1. 재개봉하였음.

- A 위원: 민원인 신고 건을 포함하여 모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같은 생각이며 가결 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 C 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음.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제2021-48211호~4860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4860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이용자가 블로그에서 수업 자료와 함께 방송 ‘○○○○○○○○○○’의 한 회차 방송분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권리자에 의하여 네이버TV 및 유튜브를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권리자가 제공하는 영상과 심의대상 게시물 영상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제목 및 조회 수가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게시자는 권리자가 제공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블로그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심의대상 블로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게시자는 중학교 교사로서

2021학년도 1학기 원격 수업을 위한 영상 자료로 위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격수업의 확산으로 교육부는 2020. 4. 7. 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까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문체부는 저작물 이용 가이드를 작성 및 배포하였음.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접근 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 학생만 로그인 활용),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출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게시자가 중학교 교사로서 교육 목적으로 영상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여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하지만 복제방지조치 등 저작권 보호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경고문구 표시조차 없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블로그에 영상을 공개하고 있어 저작권법 및 유관기관이 제시하는 저작물 이용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4860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해당 영상물을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 중에 재생하였거나, 설령 온라인 수업 중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만 로그인하

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임.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나 교육청 프로그램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업 중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블로그 등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 A 위원: 권리자가 제공한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제공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임.  
다만 오로지 교육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영상 내에 이미 저작물명, 권리자명이 표시되어 있어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까지 할 경우 자칫 교육 의지가 좌절될 것이 우려됨.
- B 위원: 저작권법 준수 안내를 위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C 위원: 본 위원도 출처 표시는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나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등 시행령 제9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모든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문체부가 제공한 가이드 역시 접근제한 및 복제방지 조치,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및 출처 표시의 세 가지 조치를 요한다고 정하고 있음. 해당 가이드의 경우, 접근제한 및 복제방지 조치의 준수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
- C 위원: 복제·전송자에게 경고 시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정하기 어려울 것임.
- 강나래 전문위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고만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안내하고 있지는 않음.
- B 위원: 경고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OSP에게 시정을 권고하면 OSP가 이용자에게 정형화된 내부 형식으로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호원에서 안내한다고 하여도 OSP에게 송부하는 공문상의 안내이므로 그러한 안내가 복제·전송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 또는 강제할 수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OSP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만 확인하고 있음. 시정권고를 받고 보호원 열린상담실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음. 그런 경우 시정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음.

- B 위원: 경고의 시정권고의 취지가 저작권법 준수 안내 및 올바른 저작권 이용 방향을 제시하자는 측면에 있다면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동의함. 가능하다면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권 침해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심의에도 복잡한 사실 관계의 안건이 상정되고 있음. 이에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사유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보호원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48601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4860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카페에서 방송 ‘○○○○○○○○○○’의 한 회차 방송분의 일부 및 스크린샷을 이용하면서 감상평 및 개인적 소견을 함께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영상의 형식, 화면 구성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한 회차 전체 분량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특정 출연진이 등장한 약 26분 가량만 편집하여 12장 분량의 스크린샷과 함께 게시한 것으로 판단됨.  
 스크린샷 부분의 경우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영상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

해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감상평 및 소견 부분은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게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4860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확실해 보임. 내용적인 편집도 없이 단순 복제·전송하였음.
- C 위원: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감상평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이 부분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같은 의견임.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8602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1-48603호~48609호는 긴급대응 저작물로, 신속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17.

분과위원장 대행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